남양산업 금호어울림 입주자 모집공고

※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, 미숙지로 인한 착오청약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.

1. 본 아파트는 「신탁법」 및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토지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위탁자 겸 수익자인 우림종합건설(이하 수익자 대한토지신탁㈜가 2015.12.07. 체결한 신탁계약에 내용에 따라 공급되는 것입니다.
2.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.12.17.입니다.(청약자격조건의 기간, 나이,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은 한다기준일임)
3. 본 아파트는 200㎡초과 8층 1개동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"주주제기간, 청약기속, 청약당첨 기합기간"을 점수로 제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「청약가점제」, 가 적용됩니다.
4.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문화 창작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시어 인터넷뱅킹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5. 이 공고문은 금호어울림 인터넷 홈페이지(www.s-khapt.co.kr)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6.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.
   -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(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)으로부터 본인인증을 위임받은 은행에 입금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- 인터넷 청약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(www.yapt2you.com), 국민은행(www.kbstar.com)에 문의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7. 본 아파트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3항 제3호」(2012.02.27 개정 주택공급 모집공고일 현재 2015.12.17) 주택의 청약가능자격을 해당 주택건설지역(광역시, 경상남도 전역 및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로 확대 적용됩니다. 또한 동 규칙 제10조 6항에 따라 현재 만6세 이상인 사람 및 「장애인 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첨자 중 주택공급신청 (특별 및 일반공급시) 1순위 주택배정일 해당일 자에 대해서 1회(중복) 만 1순위 자격을 인정하여 최대한 우선 배정합니다.
8. 「주택공급에 관한규칙」 제 19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가운데 특별공급, 신청부부 특별공급, 노부모 특별공급 등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. (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조 제 2항 제2호 제1항)
9. 공급유형(특별공급, 일반공급), 순위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라며, 해당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든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10. 주택공급 면적의 표기방법
    - 2009.4.1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법 제21조(주택공급 신청 및 방법 등)에 따라 다다나기구 홈페이지 주택공급 신청 및 방법을 참조할 것 입니다.
    - 사업주체가 청약자 주택소개 및 홍보 등의 수단으로 주거전문회사인 다다나기구 홈페이지 "분양주택 공급 신청 및 방법 등" 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남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함.
    - 본 주택에 관한 신청자격 등의 판단 시 기준은 주거전문회사인 다다나기구 홈페이지 "분양주택 공급 신청 및 방법 등" 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남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함.
    - 주거전문회사인 다다나기구 홈페이지 "분양주택 공급 신청 및 방법 등" 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남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함.
11.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,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,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대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12. 세대별 주택공급 면적은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제4호에 의거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며 주거전용면적은 현관문 안쪽 벽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하며 주거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말합니다.
13. 본 아파트는 「주택법」 제 15조 제 1항 및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 21조 제 1항 제 3호 및 제 4호 및 제 5호 및 제 6호 및 제 7호 및 제 8호 및 제 9호 및 제 10호 및 제 11호 및 제 12호 및 제 13호 및 제 14호 및 제 15호 및 제